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1081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힐 담당변호사 정호민, 박은석

피고A

변론 종결2023. 3. 14.

판결 선고2023. 4.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0. 7. 14. 접수 제50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2020. 7. 1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B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09. 01. 소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창업기업자금, 원금 상환은 2년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3.85%,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소외 B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한도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B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20. 7. 13. 기준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38,821,068원이다.

라. 소외 B은 202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인 2020. 7. 13. 보유한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105,000,000	매수가액
2	경주시 D 답 279평, E 답 176평	210,560,000	경주지원 F 감정가액
3	경주시 G 전 460㎡	40,480,000	압류재산 감정가액
4	경주시 H 전 1286㎡	106,738,000	상동
합계	462,778,000		

바. 소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인 2020. 7. 13. 보유한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127,777,810원(보증채무 포함)	갑 제10호증
2	I조합	100,000,000원	갑 제12호증
3	J은행	27,861,851원	갑 제11호증
4	포항세무서	150,736,420원	갑 제16호증
5	원고	38,821,068	갑 제13호증
6	피고	100,000,000원	피고 주장

1	소상공인진흥공단	127,777,810원(보증채무 포함)	갑 제10호증
7	K은행	17,563,881원	갑 제15호증
계	562,761,0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시스템운영과, 포항세무서, 포항시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L기관,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I조합, J은행, K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포항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B은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남인 B의 부탁으로 2014. 11. 14.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원고를 해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변제를 받은 것이어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반드시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다1686 판결 등 참조),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는 모든 적극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의 가액과 사해행위 당시의 모든 소극재산의 가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채무초과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설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B의 여러 채권자 중 1명인데, 소외 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우선변제받은 셈이어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진숙

별지